

『마당개 시·중점지구』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<법률 제11062호>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(지역·지구 등)을 새로이 조사·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사 업 명 : 『마당개 시·중점지구』 지적재조사사업
- 2) 사업위치 : 중산동 1135-6번지 일원
- 3) 사업규모 : (사업 전) 99필지, 72,686㎡ (사업 후) 82필지, 72,888.6㎡

2. 토지이용 규제내용(지역·지구 등) 변경사항

구 분	명 칭	변 경 사 항	비 고
국토계획 - 교통시설	소로1류	『마당개 시·중점지구』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	-
산지관리 -	공익용산지		-
보전준보전산지	준보전산지		-

3. 지형도면: 게재 생략

-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민원지적과(☎032-760-729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,
-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 가능